

의안번호	2202028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4.10.25.
추계번호	24D220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제5항: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소방 장비, 용품 등의 기술 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 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6항: 소방청은 소방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산업체들이 해외 인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장비의 기술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음 소방용품·장비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 규정함	재량규정 의무규정
3	안 제14조의3 신설(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할 수 있고,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8.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9.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4	안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제1항: 소방청장 등이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추가함	재량규정
		제3항: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산업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부칙 제2조(공단 신설에 따른 사업 및 인력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용품 및 장비 관련 인증업무를 제외한 기술원의 사업을 공단이 승계하고, 종전의 기술원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봄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3	안 제14조의3(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4	안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5	안 부칙 제2조(공단 신설에 따른 사업 및 인력에 관한 경과 조치)	

Ⅲ. 미첨부 사유

□ 소방산업의 표준화(안 제9조)

- 소방청장이 소방관련 장비, 용품 등의 기술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소방기술 표준 관련 국제표준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강화 및 국내 산업체의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소방관련 기술의 성능 인증 및 국제표준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기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확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 소방청의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소방장비 첨단과학화 방안 및 R&D 투자전략’(3,000만원, 2022년), ‘소방장비인증 품목 현장심사기준 마련’(3,000만원, 2001년) 포함되어 추진
 - － 소방청의 소방장비기본규격개발사업에 따르면, 전문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소방청 심의를 거쳐 확정된 표준규격을 통해 소방장비 품질향상과 국제 소방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추진 중이며 2024년 기준 3억 9,500만원의 예산 편성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범위 축소(안 제14조)와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안 제14조의3 신설)

- 개정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범위를 소방용품·장비 품질 인증 등으로 축소하고,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한 소방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승계하며,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이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개정안의 부칙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 소방산업의 육성 등의 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보도록 규정
-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및 담당직원 승계 규모, 소방청장 등이 신규 위탁 및 대행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워 추계하기 곤란함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0조)

-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추가하고, 국내 소방산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기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확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 소방청의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르면,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으로 소방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추진 중이며 2024년 기준 7억 8,500만원의 예산 편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